

기자간담회

2019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2019. 1. 23.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공동주최_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
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
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개요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담회>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개혁 실종과 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 일시/장소 :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430호

❖ 사회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인사말 :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 모두발언 :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거버넌스 개편”

 _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분야별 정책과제 발표

- 공영방송 제도개선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지상파정책 :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 광고정책 :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 : 송덕호 마포FM 대표
-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 젠더 정책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 이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미디어교육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 질의응답

(1)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았습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임기도 절반을 넘어갑니다. 미디어개혁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져만 갑니다. “미디어개혁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쏟아집니다.

2017년 8월, 우리단체들은 4기 방통위 출범에 맞춰 주요 개혁과제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선 10년 동안 짓밟힌 시청자/이용자 주권을 되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정리해 담았습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시청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마치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그 후 4기 방통위의 행보는 우리가 지켜본 대로입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압력을 행사해 이사장을 교체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정치적 독립성, 절차의 투명성, 성별과 지역의 대표성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는 협소한 범위에 한정하여, 폐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허용으로 시청권을 훼손당한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고제도는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기능을 잃은 채 사업자를 어르고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입니다.

방통위는 종편 특혜로 파생된 시장교란을 바로잡는 데도 무능하였습니다. 종편에게 허용한 1사 1립 체제는 광고시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MBN 사태 등을 통하여 종편의 불법 광고영업 및 홈쇼핑 연계판매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였고, 종편 미디어랩 부실승인심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통신 분야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방통위는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정성 평가’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개인정보 감독체계 개편에 어깃장을 놓는 사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유료방송정책 또한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의 공공성과 방송통신 노동자의 권리

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가 없습니다. M&A를 예고하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는 깜깜무소식입니다. 고용관련 심사항목 배점은 여전히 1000점 만점의 10점, 단 1%에 불과합니다. 콘텐츠시장의 비정규직도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은 오늘도 '밤샘노동'에 시달리는 스태프로 넘쳐납니다.

시청자와 공동체미디어를 위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입니다. 공동체라디오 연구반이 꾸려졌지만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출력증강과 같이 시급한 정책마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약속한 지상파MMS 등 무료보편적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성 추가설립에 치중하고 있으며, 관(官)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력하는 미디어 교육체계 수립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미디어리터러시는 인터넷윤리체험과 청소년보호라는 구 시대적 발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4기 방통위의 중간평가 결과는 한 마디로 낙제점입니다. '미디어개혁 실종'의 책임 한 가운데에 방통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채 방통위 3대 적폐인 '정치종속', '자본편향', '관료주의'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정부와 방통위가 개혁을 방치하는 사이 미디어환경은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업논리에 휩쓸려 공공성을 살릴 마지막 불씨마저 사라질 거란 위기감을 느낍니다.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청자/이용자 권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미디어공공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단체들은 지난 연말부터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미디어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섭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제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과 시청자, 이용자를 위한 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개혁 실종과 방통위의 책임방기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2)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1.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권리 중심의 기구로 재편

2.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3. 무료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정책 수립

4. 시청권 보장을 위한 광고의 투명성 강화

5. 방송스태프·방송통신노동자 권리 강화

6.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체계 재구성

7.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8. 성 평등한 미디어 실현

9. 강제적인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도 폐지

10. 통신심의 축소,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11. 시민·사회역량을 강화하는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3) 분야별 정책과제

의제 1 ■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및 시청자 권익 기구

【요구안】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자·이용자 권리 중심의 기구로 재편

【정책제안】

1. 방송통신기구를 방통위로 일원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통위 간 권한의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인하여 노정되어 왔던 정책지연과 혼란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부재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이 소폭에 그치고, 방송통신기구 재편이 제외되면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부처 이원체제는 산업영역에서 중복관심과 정책갈등을, 공익적 책무 영역에서 상호 책임회피를 유발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최우선 목표는 공공성이 돼야 한다.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결정기구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가 돼야 한다.

2. 정책결정의 투명성, 책무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재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이용자 관점을 반영하는데 역부족이다. 정보격차 해소, 개인정보보호, 이용자 안전 등 공공서비스 의제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축소되거나 방치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많은 정책이 밀실에서 논의되며, 여야 3대2 구조는 정치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방통위 내에 시청자와 이용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시청자전담부서(또는 기구)는 민간이 참여하고, 협업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하며, 방통위의 투명성 및 책무성, 시청자/이용자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시청자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의제 2 | 공영방송 정책

【요구안】 공영방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정책제안】

1.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방송 이사선임 방안을 마련하고, 방통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도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편성,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의견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현행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칭)국민추천이사제를 도입, 방통위가 이사 정원의 1/3 이상을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선임, 선임절차 및 과정은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임절차와 과정의 공개원칙, 합의제 정신은 일부가 아닌 이사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원칙을 넘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방안에는 △후보자 및 추천인 정보공개, △심사기준 및 추천(임명) 사유의 공개, △정보공개기준과 시민참여의 방식이 포함돼야 하며, 이를 방통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도화해야 한다.

2.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2-1 성 평등 규정 :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2-2 지역대표성 보장 방안 마련

현행 이사회는 성별과 지역의 대표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때 특정 성(性)이 정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준용) 또한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 선임 심사에 적용해야 한다.

3. 공영방송 이사회의 자치적인 책무성, 투명성 강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문제는 정치적 지형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이사들의 정치적 대리전 양상을 보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에 관한 공영방송 제도 개선 논의는 새로운 법령제정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 공영방송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위자의 실질적 운영수준에서 자치적인 해법의 모색 즉, 어떻게 공영방송이라는 공공의 자원을 조직화하고 운영하는 자치적 틀을 만들 것인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제도개선은 이사회의 기능과 실질적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책무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감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① 이사회 평가기준 마련 : 경영성과 평가 및 공표에 있어 이사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
- ② 이사회사무규정 강화 : 공영방송 이사회가 실질적 운영 수준에서 자치적인 운영 원리를 확립해 갈 수 있는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회의공개 등)

4. 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 선임 방식 등 주요 제도를 개선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사장 및 이사선임방식을 개선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대표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시민을 대표하여 공영방송을 감독하는 주체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첫째, 방송사업자나 사장이 자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한다. 사업자, 종사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또는 독립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자위원을 선임하도록 한다. 시민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할당 기준을 적용한다. 둘째,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불만처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는 내용불만을 포함한 시청자민원을 접수-처리-조정-종결-통지하는 절차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방송평가기능을 강화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 재허가 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를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내실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가 매해마다 방송평가를 실시/공표하도록 한다.

의제 3 | 지상파 플랫폼 정책

【요구안】 무료보편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상파 정책 수립

【정책제안】

1. 지상파 직접수신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지상파 직접수신을 확대하는 것은 시청자의 무료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지난 KT화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상파 직접수신 환경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 직접수신을 확대 및 MMS도입 등 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 보장을 위한 시청자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 직접수신을 30% 달성 등 지상파 직접수신을 증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시청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UHD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현재 UHD 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있는 가구가 거의 없다. UHD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조차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제쯤 UHD 방송을 제대로 시청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하며, 현재의 UHD 방송 의무편성 비율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8K 16K 등 이후 UHD 방송 세대변화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국민과 약속한 MMS 도입을 이행하여 무료보편적서비스를 강화하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지상파 MMS 본방송 도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청자와 약속한 MMS정책이 오리무중이다. MMS도입은 지상파 디지털전환이 단순 화질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 선택권을 강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시험방송 1년 후 EBS에 MMS 본방송을 허용하기로 했음에도 EBS2TV는 3년이 넘는 지금도 시험방송 상태다. 공영방송 중심으로 MMS를 확대하여 무료방송다채널서비스 실시하길 기대했지만 방통위는 묵묵부답이다. 아무런 공식해명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국민과 약속한 MMS(지상파 무료다채널서비스)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MMS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지상파 무료다채널서비스를 어떤 방안을 통해 실현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더 이상의 회피는 시청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의제 4 | 방송광고제도

【요구안】 시청권 보장을 위한 광고의 투명성 강화

【정책제안】

1. 시청자 의견수렴 없는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을 중단하고, 시청권 보장을 포함한 광고제도 전면 개편을 시행

1-1. 경비제공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하여 미디어렐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

1-2. 간접광고 상품고지 의무화

1-3. 간접·가상광고 등 시청권 침해가 큰 '프로그램 내 광고' 축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의 재원 확보라는 미명 하에 시청자에 대한 설득이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중간광고 허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상파의 재원 구조 개선에 대한 단기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에 비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광고총량제, 가상광고·간접광고 도입 등 광고규제를 대거 완화해 왔으나, PCM, 홈쇼핑 연계방송 등 사업자의 편법을 용인하고 방조하는 등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한 해소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광고 제품의 기능, 성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성 대사나 제품 시연 등의 행위를 통해 광고 효과를 주는 설정 등 다양한 행태의 노골적인 간접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는 데도 소홀히 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 중간광고를 강행하는 것을 시청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비제공 협찬을 간접광고로 분류, 미디어렐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시청자들이 내가 보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상품들이 간접광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 (광고)상품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간접·가상광고 등도 시청권 피해가 큰 보도프로그램 등에서는 금지하는 등 축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상파 중간광고 정책은 장기적인 지상파의 재원 개선 속에서 나와야 할 것이며 반드시 시청자에 대한 설득을 먼저 필요로 한다. 아울러 수신료 개선, 콘텐츠 판매 비용 등 전반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2. 종편·지상파—홈쇼핑 연계편성 실태조사 및 금지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의 생활정보프로그램과 TV홈쇼핑 방송이 동일 상품을 인접 시간대에 편성하는 연계편성을 막기 위해 종편·지상파의 생활정보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방통위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종편·지상파-홈쇼핑 연계편성' 문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시청자 및 소비자의 판단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상당수의 '연계편성'

행위를 적발하였으나 협찬고지에 대한 관련법 미비로 '위법행위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바 있다. 시청자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교양프로그램에까지 협찬고지 등을 통해 상품광고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활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연계방송을 철저히 금지토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의 내용과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3. 민영미디어렐에 공적책무를 부여하는 미디어렐 제도 개선

3-1 민영미디어렐의 광고판매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

3-2 자사렐 폐지를 포함한 공익적 광고판매제도 방안 연구

미디어렐은 사회적 공익인 '방송'을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돼 왔다. 헌법 재판소의 두 번의 판결(2008년 11월/2013년 9월)에서도 "방송의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광고주나 특정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여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등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일련의 상황들은 미디어렐이 그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한다. '연계판매'가 횡행하고, MBN미디어렐 업무일지 파장에서 드러났듯 광고영업에 기자들이 동원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1사1렐'이 사실상 자사렐로 운영되는 실태는 광고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점에서 민영미디어렐의 광고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사렐 허용의 폐지를 포함하여 근본적인 광고판매제도개선 연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의제 5 | 미디어노동 및 제작환경 개선

【요구안】 방송스태프·방송통신노동자 권리 강화

【정책제안】

1. 방송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휘감독에 따라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보험을 통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이 겪는 장시간노동저임금·인격적 모욕·사회보험 미적용 등의 문제 해결은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사 정규직 및 타 직종 임금과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프로젝트성 노동인 방송의 탄력근로제 적용 제외

방송제작과 관련해 여전히 '밤샘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6개월 등)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당 탄력근로제는 방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방송제작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주의 최장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80시간(휴일 2일, 16시간)으로 운영가능하다. 하지만 방송은 프로젝트성 노동으로 단기간 모여 일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성 노동에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방송의 탄력근로제 적용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우 등을 지속적으로 실태조사하고 이를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3. 상시지속업무 통신노동자의 직접고용 확대방안 마련

유료방송사업자 대다수는 통신망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정부가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는 이유도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때문이다. 망 유지·관리, 개통·AS 등은 사업자의 상시지속업무임과 동시에 방송통신공공성을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사업자들이 상시지속업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사용자 책임과 방송통신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방통위가 제시하고 사업자들을 유도, 견인해야 한다.

의제 6 | 공동체라디오방송 진흥

【요구안】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체계 재구성

【정책제안】

1.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공영/민영 외 제3영역으로 방송체계를 분류하고, 별도의 정책 체계를 마련

우리나라 방송정책은 공공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과 시장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민영상업방송체제로 구축되어 있다. 시민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방송영역은 정부의 방송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동체방송영역은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며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영역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이 영역의 대표적인 방송으로 기존 공영/민영 방송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방송이어서 기존 공영/민영방송의 체계와는 분리된 별도의 방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동체라디오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국회를 중심으로 통합방송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최근 발의된 통합방송법(초안)은 IPTV 법과 같이 기존에 나눠져 있던 방송법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공영방송 관련법은 독자법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은 민영상업(영리)방송을 수평적으로 규제하는 틀로 구성될 것이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의 하나로 분류되어 통합방송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제3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체방송의 하나로 진흥의 대상이지 규제의 대상은 아니다. 공동체라디오 역시 진흥을 위한 독자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지원 정책의 수립

3-1.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즉각 마련

3-2. 공동체라디오방송 주파수 출력 증강

3-3.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허가 연내 실시

지난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생존의 위기에 있는 기존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긴급지원이 필요하여, 실제 방송으로서 역할하기에 턱없이 낮은 출력을 증강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을 원하는 전국의 다양한 주체들이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허가를 연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의제 7 | 유료방송 정책

【요구안】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정책제안】

1.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제도 개선

1-1. 인수합병(M&A) 심사 시 지역성, 시청자 선택권 보장을 주요 심사항목에 포함

1-2. 인허가, 재허가, 인수합병 심사 시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

1-3. 정기적인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에 반영, 노동권 및 고용보장에 관한 심사배점
상향

1-4. 심사 자료의 공개 등 투명한 심사 방안 마련

인수합병과 허가/재허가는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노동자, 이용자의 권리에 주목하고 이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방통위는 노동조합 및 미디어운동단체들과 소통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 심사에 있어 '노동권'과 '시청권', '지역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과기정통부가 현행 10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한 '일자리' 항목의 배점을 늘리도록 부처간 협의해야 한다. 현행 인허가, 재허가, 변경허가 심사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유료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을 감안하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현업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는 '필요시' 청문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인데, 현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

2. 지역성 등 공적책무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유료방송 정책 마련

유료방송 간 M&A가 가속화할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M&A를 통하여 유료방송시장이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면 케이블SO에게 부여됐던 지역성 책무가 축소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유료방송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한다면 전송방식이나 사업권역과 별도로 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2016년 미래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최근 민주당이 <통합방송법 초안>(김성수 대표 발의)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대책은 미흡한 수준이다. 전국사업자에게도 지역사회 기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지역채널을 확대하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성 외에도 유료방송 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책임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3.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권역별(또는 광역단위)로 설치·운영, 채널구성 및 상품서비스 불만 등의 처리 기능을 부여

유료방송에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콘텐츠사업자와는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상품별 채널 구성, 채널 편성에 대한 시청자 평가, 설치 및 AS 등에 대한 시청자불만,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별 시장상황이나 서비스 제공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자별 보다는 권역별 또는 광역단위별 설치가 바람직하며, 재허가 심사 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권한을 실질화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의제 8 | 성 평등

【요구안】 성 평등한 미디어 실현

【정책제안】

1. 젠더관점의 미디어 정책제도 마련

1-1. 방통위 젠더 담당관제를 도입, 모든 정책결정 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반영

1-2. 젠더 관점의 방송평가 실시

미디어 내의 성역할 고정화,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정책에 젠더 관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에 방통위에 젠더 담당관을 두어 모든 정책에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 성비, 각 방송사 및 방통위 내 정책 결정자의 성비, 각종 위원회의 성비 등 인력의 구조 또한 젠더 담당관을 통해 관리 감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젠더 관점의 미디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젠더 담당관을 방통위의 주요 정책 부서에 두되 직급은 국장급 이상이 되어야 실효성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법상 편성책임자와 같이 주요 방송사에 젠더 담당관 배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말 방통위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대폭 개정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중증 장애인 고용 시 가점을 부여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미디어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력 구조에서부터 성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디어 정책 결정자 및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하는 주요 자리에 특정성이 60% 이상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방송평가 항목 중 운영영역에 간부급 이상 여성 비율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편성 영역에 여성관련 프로그램 편성 비율, 내용영역에 여성 의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가점을 부여하여 미디어에 젠더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공영방송 이사회 등 미디어 공적기구의 구성에서 성 평등 실현

현행 공영방송의 이사회 성비는 채 30%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미디어의 성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부터 성비균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방송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이사회의 성비 균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사회 선임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이를 방송법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종편에도 주요 정책 결정자의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의제 9 ■ 인터넷 실명제 정책

【요구안】 강제적인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도 폐지

【정책제안】

1. 휴대전화 실명제 폐지

모바일 환경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휴대전화 실명제를 통해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 앱 사용기록 등이 개인식별정보와 연계됨으로써 휴대전화 이용자에 대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요금의 정산이 보장되는 이상 굳이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단지 수사 편의성만을 위한 휴대전화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폐지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본인확인기관들은 공통적으로 CI 등의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주민번호는 이용자의 온라인

기록과 연계되고 추적될 수 있는데, 이는 이용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온라인 본인확인의 방법과 수준은 서비스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개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채택할 문제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본인확인 기술 개발을 저해할 뿐이다.

의제 10 ■ 통신내용규제

【요구안】 통신심의 축소,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제안】

1.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임시조치제도 개선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였다. 방통위에서도 오래 동안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아직 임시조치 개선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 게시자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필요하다.

2. 정보통신방법을 개정하여 불법정보의 심의대상을 축소, 심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 규정 개정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나 아직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선 방심위의 심의 대상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통신심의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허위정보유포)규제 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의제11 | 미디어교육 진흥과 시민의 미디어참여

【요구안】 시민·사회역량을 강화하는 미디어교육 지원정책

【정책제안】

1. 민간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체계 마련

1-1 미디어교육, 미디어참여,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련 상시적이고 공식적인 민간 참여 협의체 운영

1-2 미디어교육, 미디어참여,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시민미디어 활성화를 전담하는 부서 설치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적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교육/시민의 미디어참여/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은 방통위의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중심·민간주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해 정책의 '수립-수행-평가'의 전 과정을 민간과 협의/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참여적 의사결정체계를 운영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위상을 강화하고 정책과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운영 정책의 내실화

2-1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건립 지역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 마련

2-2 기초자치단체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 및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2-3 지역의 미디어교육/미디어참여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민주적 운영구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지역미디어센터가 이미 40여개 소나 운영되고 있다. 방통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미디어센터와의 연계를 위한 중장기 방안마련 없이 추가설립에 치중하고 있다. '광역형 지역미디어센터'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전국적 수준의 지역미디어센터 설립·운영 정책을 정비하고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고려한 신규 설립지역(광역) 선정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3. 디지털미디어시대/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의 미디어참여 지원 정책 마련

3-1.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정책의 강화

3-3.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지원 정책 마련

3-4.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정책 강화

시민의 방송참여(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대상 사업자의 확대 및 공영방송의 지원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관련 배점을 확대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심의기준과 절차 마련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시민이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쇄신·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분권/주민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주민)의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미디어활성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4.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미디어교육 정책 강화

4-1. 미디어교육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4-2. 미디어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4-3. 부처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정책수립과 추진

민간/시민사회 주도로 미디어교육이 확산되고 활성화되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에 대한 정치적 배제로 인해 성과가 단절되고 위축되었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 미디어교육 단체의 미디어교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미디어교육의 생태계 활성화)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정부/공공은 민간의 역량강화와 활동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특정부처 주도가 아닌,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5. 권위주의적 인터넷윤리 교육을 중단하고 정보인권 중심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4기 정책과제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정한 윤리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에게 교육하겠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발상이다. 정부는 시민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이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정보접근/디지털 권리/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어린이/청소년이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